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961
----------	------

제 안 년 월 일 : 2024년 6월 26일
발 의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경 의원이 2024년 5월 27일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888)과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5월 27일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1905)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(2024. 6. 26.)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와 인생 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(50세 이상 65세 미만→40세 이상 65세 미만) 등 각각 제출된 동일 제명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“장년층”을 “중장년층”으로 개정(안 제1조, 제2조 등)
- “50세 이상 65세 미만”을 “40세 이상 65세 미만”으로 개정(안 제2조제1호)
-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를 위한 내용 신설(안 제16조의2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시 장년층”을 “서울특별시 중장년층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장년층”을 각각 “중장년층”으로 하고, “50”을 “40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, 제14조제1항 중 “장년층”을 각각 “중장년층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구체적”을 “구체적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부득이 한”을 “부득이한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전단 중 “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)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<u>서울시 장년층</u>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 <u>서울특별시 중장년층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<u>장년층</u>"이라 함은 「서울특별시 <u>장년층</u>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<u>50</u>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<u>"중장년층"</u>이라 함은 「서울특별시 <u>중장년층</u>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----- <u>40</u>세 ----- --.</p>
<p>제5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3. <u>장년층</u>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4. <u>장년층</u>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, 사회공헌활동 지원, 문화·여가 지원 사업,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5. <u>장년층</u>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	<p>제5조(재단의 사업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중장년층</u> ----- ----- 4. <u>중장년층</u> ----- ----- ----- 5. <u>중장년층</u> ----- -----

- 6.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7.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
- 8. 장년층 사업 관련 민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, 연계
- 9. 그 밖에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제6조(재산) 재단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,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0조(이사회) ①·② (생략)
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(생략)

제12조(출연금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

- ① 시장은 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
- 6. 중장년층 -----
- 7. 중장년층 -----
- 8. 중장년층 -----
- 9. ----- 중장년층 -----

제6조(재산) -----
구체적인 -----.

제10조(이사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③ ----- 부득이한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출연금 교부) -----
범위 -----.

제14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

- ① ----- 중장년층 -----
- ② ----- 서울특별시 -----

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

①·② (생략)

③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17조(지도·감독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서울특별시의회 -----
-----.

제16조의2(환경·사회·투명 경영 (ESG) 활성화)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 (ESG)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지도·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서울특별시 -----

-----.